

감정평가서

의뢰인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사법보좌관 김광택
건명	김형운 소유물건(2024타경3281)
감정서번호	T2024-06-2005

이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 의뢰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타인(의뢰인 또는 담보감정평가사 확인은행이 아닌 자)이 사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복사, 개작(改作), 전재(轉載)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결과에 대하여 감정평가업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태인감정평가사사무소

(토지)감정평가표

이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감정평가이론에 따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기에 서명날인합니다.

감정평가사

(인)

김성숙

감정평가액	일억오천삼백이십일만오천이백육십원정(₩153,215,260.-)					
의뢰인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사법보좌관 김광택		감정평가목적	법원경매		
채무자	-		제출처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경매5계		
소유자 (대상업체명)	김형윤 (2024타경3281)		기준가치	시장가치		
			감정평가 조건	-		
목록 표시근거	귀 제시목록		기준시점	조사기간	작성일	
			2024.06.27	2024.06.26 ~ 2024.06.27	2024. 06. 29	
감정 평가 내 용	공부(公簿)(의뢰)		사정		감정평가액	
	종류	면적(㎡) 또는 수량	종류	면적(㎡) 또는 수량	단가	금액
	토지	674 3,372x----- 3,372	토지	954.99	-	152,236,400
	제시외건물	1 843x- 3 1 56.70x- 3	제시외건물	18.9	-	220,860
	제시외 수목	1 178여주x- 3	제시외수목	일괄	-	758,000
합계						₩153,215,26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 별 지 참 조 "

토지건물 감정평가명세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 목 및 용 도	용도지역 및 구 조	면 적 (㎡)		감 정 평 가 액		비 고
					공 부	사 정	단 가	금 액	
1	경상남도 진주시 상봉동	347	답		674 674x---- 3,372	134.72	160,000	21,555,200	지분평가
2	"	347-1	답		674 676x---- 3,372	135.11	160,000	21,617,600	지분평가
3	"	347-2	답		674 674x---- 3,372	134.72	160,000	21,555,200	지분평가
4	"	347-3	답		674 674x---- 3,372	134.72	160,000	21,555,200	지분평가
5	"	347-4	답		674 674x---- 3,372	134.72	160,000	21,555,200	지분평가
6	"	581	전		1 843x- 3	281	158,000	44,398,000	지분평가
	[제시외 건물	로	제한	받은 상태	토지	가액	39,950,000]	
	[제시외 수목	으로	제한	받은 상태	토지	가액	39,950,000]	
	[제시외 건물, 제시외 수목	으로	제한	받은 상태	토지	가액	35,510,000]	
	<제시외 건물>								
ㄱ	"	581 위지상	주택	조적조 스레트지붕 단층	1 (36.0)x- 3	12.0	12,200	146,400	550,000 x 1/45 관찰감가 지분
ㄴ			화장실	조적조	1 (2.7)x-	0.9	11,400	10,260	400,000

토지건물 감정평가명세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 목 및 용 도	용도지역 및 구 조	면 적 (㎡)		감 정 평 가 액		비 고
					공 부	사 정	단 가	금 액	
ㄷ			참고 등	스레트지붕 단층	3				x 1/35 관찰감가 지분
				조적조 스레트지붕 단층	1 (15.0)x- 3	5.0	7,140	35,700	250,000 x 1/35 관찰감가 지분
ㄹ			참고	목조 함석지붕 단층	1 (3.0)x- 3	1.0	28,500	28,500	200,000 x 5/35 관찰감가 지분
ㅁ	<제시외 수목>	581 위지상	밤나무, 석류나무, 복분자 등	-	1 178여주x- 3	일괄	-	758,000	지분
합 계								₩153,215,260.-	
				이	하	여	백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1. 감정평가 개요

1. 감정평가목적

본건은 경상남도 진주시 상봉동에 위치하는 부동산(토지)으로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의뢰한 경매 목적의 감정평가 건입니다.

2. 실지조사 및 기준시점

가. 기준시점 결정 및 그 이유

본건 감정평가의 기준시점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9조(기본적사항의 확정) 제2항 규정에 따라 대상 물건에 대한 가격조사 완료 일자인 2024년 06월 27일로 하였습니다.

나. 실지조사 및 실시기간 및 내용

본건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0조(대상물건의 확인)에 따라 2024년 06월 27일자로 대상물건의 실지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3. 기준가치

가. 개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에 따라 대상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감정평가 의뢰인이 요청하는 경우, 감정평가의 목적이나 대상물건의 특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감정평가액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나. 기준가치 결정 및 그 이유

본건은 감정평가목적 등을 고려하여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에 따라 대상물건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 그 대상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물건의 가액인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감정평가 하였습니다.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4. 의뢰인이 제시한 감정평가조건에 대한 검토

별도의 감정평가조건은 없습니다.

5. 감정평가방법

가. 관련법령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7조에 따라 개별로 평가하고, 동규칙 제12조 제2항에 따라 대상 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주된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하나 이상의 다른 감정평가방법으로 산출한 시산가액과 비교하여 합리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다만 대상물건의 특성 등으로 인하여 다른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불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감정평가방법

1) 감정평가방식

원가법 및 적산법 등 비용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인 원가방식, 거래사례비교법, 임대사례비교법 등 시장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으로 공시지가기준법 등을 포함하는 비교방식, 수익환원법 및 수익분석법 등 수익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인 수익방식 등이 있습니다.

2) 감정평가방법

감정평가의 방법은 대상물건의 재조달원가에 감가수정을 하여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원가법, 대상물건과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 시점수정, 가치형성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거래사례비교법, 대상물건이 장래 산출 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이나 미래의 현금흐름을 환원하거나 할인하여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수익환원법,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및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1항에 따라 감정평가의 대상이 된 토지와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하여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대상 토지의 현황에 맞게 시점수정,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비교, 그 밖의 요인의 보정을 거쳐 대상 토지의 가액을 산정하는 공시지가기준법 등이 있습니다.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다. 토지의 감정평가방법의 결정

토지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 및 제14조에 의거 공시지가기준법으로 평가액을 결정하되, 타 방식인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하여 산출된 시산가액과 비교하여 그 합리성과 시장성을 검토하여 감정평가액을 결정하였습니다.

6. 기타 참고 사항

- 기호 6 토지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2개의 용도지역(자연녹지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에 걸쳐 소재하나, '제2종일반주거지역'에 해당되는 면적이 극히 미미한 바, 주된 용도지역인 자연녹지지역을 기준으로 평가하였습니다.
- 기호 6 지상에 미등재 제시외 건물 기호 ㄱ~ㄴ(주택 및 창고 등)이 소재하나, 평가 목적을 고려하여 토지는 정상평가하되, 제한받은 상태의 토지가격을 병기하였으니, 경매 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미등재 제시외 건물은 개략적인 실측면적을 적용하였습니다.
- 기호 6은 지적경계가 다소 불분명 한 바 지상의 소유자 미상의 제시외 수목은 수종, 수령, 수량 등을 개략적으로 조사하여 감정평가하였으며, 제한받은 상태의 토지가격을 병기하였으니, 경매 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호 6은 지적경계가 다소 불분명한 바 정확한 정확한 이용상황 및 경계는 측량을 요합니다.
- 본건 토지는 2인 이상이 공동소유하는 공동소유부동산으로 매각대상 지분의 위치 및 경계 확인이 곤란한 바 부동산 전체를 기준으로 평가하되 지분 비율로 면적 사정하였습니다.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II. 토지평가액의 산출근거

1. 대상토지의 개요

기호	소재지 (진주시)	지목	면적 (㎡)	이용 상황	용도 지역	형상 지세	공시지가 (원/㎡)	비고
1	상봉동 347	답	674 × 674/3372 =134.72	전	자연녹지	사다리 완경사	68,600	
2	상봉동 347-1	답	676 × 674/3372 =135.11	전	자연녹지	사다리 완경사	68,600	
3	상봉동 347-2	답	674 × 674/3372 =134.72	전	자연녹지	사다리 완경사	68,600	
4	상봉동 347-3	답	674 × 674/3372 =134.72	전	자연녹지	사다리 완경사	68,600	
5	상봉동 347-4	답	674 × 674/3372 =134.72	전	자연녹지	사다리 완경사	68,600	
6	상봉동 581	전	843 × 1/3 =281	전	자연녹지	부정형 완경사	77,700	

2 공시지가 기준법에 의한 토지가액

가. 비교표준지 공시지가 선정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에 따라 평가대상 토지의 인근지역에 소재하는 표준지 중에서 평가대상 토지와 용도지역·이용상황·주변환경 등이 같거나 유사한 표준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하였습니다.

[공시기준일:2024.01.01]

기호	소재지 (진주시)	면적 (㎡)	지목	이용 상황	용도 지역	도로 교통	형상 지세	공시지가 (원/㎡)	비고
A	상봉동 307-4	1,798	답	답	자연녹지	세로(가)	사다리 평지	80,400	

※ 비교표준지의 공법상 제한 상태는 개별요인 비교시 고려하였고, 그 공법상 제한 상태가 미미할 경우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나. 시점수정

기 간	시점수정치
경상남도 진주시 (24.01.01~24.06.27) (녹지)	2024.01.01 ~ 2024.05.31 : 0.857 2024.05.01 ~ 2024.05.31 : 0.201 $(1 + 0.00857) * (1 + 0.00201 * 27/31)$ ≒ 1.01034

*가격시점이 속한 달의 자가변동률이 미고시되어 가장 최근 월의 자가변동률을 연장 적용하였음.

다. 지역요인 비교

본건은 비교표준지 인근에 위치하는 바, 지역요인은 대등합니다.(1.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라. 개별요인 비교
[농경지대]

조건	항 목	세 항 목
접근조건	교통의 편부	취락과의 접근성
		농로의 상태
자연조건	일조 등	일조, 통풍 등
	토양, 토질	토양, 토질의 양부
	관개, 배수	관개의 양부
		배수의 양부
	재해의 위험성	수해의 위험성
기타 재해의 위험성		
획지조건	면적, 경사 등	면적
		경사
	경작의 편부	형상부정 및 장애물에 의한 장애의 정도
행정적조건	행정상의 조장 및 규제정도	보조금, 융자금 등 조장의 정도
		규제의 정도
기타조건	기타	장래의 동향
		기타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기호	비교 표준지	가로 조건	접근 조건	환경/ 자연	획지 조건	행정적 조건	기타 조건	격차율	비고
1-5	A	-	1.00	1.00	0.99	1.00	1.00	0.990	

기호 1 토지는 비교표준지 대비 획지조건(경사 등)에서 열세함.

기호	비교 표준지	가로 조건	접근 조건	환경/ 자연	획지 조건	행정적 조건	기타 조건	격차율	비고
6	A	-	1.15	1.00	0.85	1.00	1.00	0.978	

기호 6 토지는 비교표준지 대비 접근조건(취락과의 접근성)에서 우세하나, 획지조건(일부 지반 자체평탄한 건부지이나, 전체적인 형상, 경사 등을 고려)에서 열세함.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마. 그 밖의 요인 보정

1) 그 밖의 보정의 필요성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2항 제5호, 대법원판례 “2003다 38207판결(2004.05.14선고), ” 2002두 5054(2003.07.5선고), 국토교통부 유권해석(건설부 토정 30241-36538, 1991.12.28) 등에서 기타요인 보정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바, 인근의 감정평가선례, 지가수준 및 지가동향을 기초로 그 밖의 요인을 보정하고자 합니다.

2) 인근 감정평가선례 및 거래사례

[자료출처 : 감정평가정보센터 및 감정평가정보체계 등]

일련 번호	소재지 (진주시)	지목	용도지역	토지단가 (원/㎡)	기준시점 (거래시점)	감정목적 등	비고
1	상봉동 1***	전	자연녹지	181,000	2023.03.15	경매	적용
2	장재동 2**	전	자연녹지	162,000	2023.07.24	담보	

3) 본건 인근 유사토지의 지가수준

본건	본건과 유사한 자연녹지지역 내 농경지는 접근조건 및 획지조건 등에 따라 150,000 /㎡ 내외
----	---

4) 그 밖의 요인보정치 산정

(1) 감정평가 선례의 선정

대상토지와 용도지역이 동일하고 이용상황 및 감정평가목적이 동일 또는 유사한 최근의 감정평가 선례로서 그 가격이 정상적인 것으로 판단되며 본건의 적정한 감정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평가 선례 및 사례를 선정 적용합니다.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2) 그 밖의 요인 보정치 산출방법

$$\text{그 밖의 요인 보정치} = \frac{\text{평가선례(거래사례)기준 표준지가격}}{\text{표준지의 가격시점 현재가격}}$$

* 평가선례(거래사례)기준 표준지가격
 $\text{= 평가선례(거래사례)} \times \text{시점수정} \times \text{지역요인} \times \text{개별요인}$

* 표준지의 가격시점 현재가격 $\text{= 공시지가} \times \text{시점수정}$

(3) 감정평가선례(사례) #1 / 표준지 (A)

구분	단가	시점수정 ^{*1)}	지역요인 ^{*2)}	개별요인 ^{*3)}	시산가격	그 밖의 요인 보정치
감정평가 선례기준 표준지단가	181,000	1.02228	1.00	0.876	161,996	1.994
가격시점당시 표준지공시지가	80,400	1.01034	-	-	81,231	
*1) 시점수정 : 진주시 녹지지역 : 2023.03.15 ~ 2024.06.27.						
*2) 지역요인비교치 : 대체로 대등함(1.00)						
*3) 개별요인비교치 :						
가로조건	접근조건	환경/ 자연	획지조건	행정적조건	기타조건	비교치
-	0.85	1.00	1.03	1.00	1.00	0.876
비교표준지는 전례(사례) 대비 획지조건(경사 등)에서 우세하나, 접근조건(취락과의 접근성 등)에서 열세함.						

5) 그 밖의 요인 보정치 결정

인근지역의 지가수준 및 상기 감정평가전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본건에 적용할 그 밖의 요인 보정치를 결정하였습니다.

표준지	그 밖의 요인 보정치
A	1.99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바.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토지가액

기호	비교 표준지	공시지가 (원/㎡)	시점수정	지역 요인	개별 요인	기타 요인	산출단가	시산단가 (원/㎡)	비고
1-5	A	80,400	1.01034	1.00	0.990	1.99	160,034	160,000	

기호	비교 표준지	공시지가 (원/㎡)	시점수정	지역 요인	개별 요인	기타 요인	산출단가	시산단가 (원/㎡)	비고
6	A	80,400	1.01034	1.00	0.978	1.99	158,094	158,0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3.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토지가액

가. 개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 제7항에 따라 대상물건과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 시점수정, 가치형성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였습니다.

나. 비교거래사례의 선정

[자료출처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감정평가정보체계]

기호	소재지 (진주시)	면적 (㎡)	지목	용도 지역	거래단가 (원/㎡)	거래시점	비고
가	장재동 2**	5,643	답	자연녹지	164,805	2021.03.05	적용
나	이현동 5***	199	답	자연녹지	180,904	2021.04.22	

상기 거래사례 중 대상토지의 인근지역에 위치하고, 용도지역 등 공법상 제한사항, 지목 및 실제이용상황 등이 같거나 유사한 사례로서 본건의 적절한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거래사례를 선정 적용하였습니다.

다. 사정보정

비교거래사례는 매도자와 매수자 사이의 정상적인 거래사례로 판단됩니다.

(사정보정치 : 1.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바. 개별요인 비교

대상 토지	거래 사례	가로 조건	접근 조건	환경/ 자연	획지 조건	행정적 조건	기타 조건	격차율	비고
1-5	가	-	0.97	1.00	0.95	1.00	1.00	0.922	

기호 1 토지는 거래사례 대비 접근조건(취락과의 접근성), 획지조건(경사 등)에서 열세함.

대상 토지	거래 사례	가로 조건	접근 조건	환경/ 자연	획지 조건	행정적 조건	기타 조건	격차율	비고
6	가	-	1.07	1.00	0.85	1.00	1.00	0.910	

기호 6 토지는 거래사례 대비 접근조건(취락과의 접근성)에서 우세하나, 획지조건(형상, 경사 등)에서 열세함.

사.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토지 시산가액

일련 번호	거래 사례	사례 단가	사정 보정	시점 수정	지역 요인	개별 요인	산출단가	결정단가	비고
1-5	가	164,805	1.00	1.06167	1.00	0.922	161,321	161,000	

일련 번호	거래 사례	사례 단가	사정 보정	시점 수정	지역 요인	개별 요인	산출단가	결정단가	비고
6	가	164,805	1.00	1.06167	1.00	0.910	159,221	159,000	

4. 시산가액 조정 및 토지 단가의 결정

가. 시산가액

일련 번호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토지가액(원/㎡)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토지가액(원/㎡)	비고
1-5	160,000	161,000	
6	158,000	159,0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나. 검토 및 토지 단가의 결정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시산가액이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과 비교하여 그 객관성 및 합리성이 인정되는 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및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1항에 따라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토지가액으로 결정합니다.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III. 감정평가액 결정의견

1. 감정평가액 결정

구분		사정면적	단가	감정평가액	비고
토지	기호 1 ~ 6	954.99	-	152,236,400	지분
제시외 건물	기호 ㄱ - ㄴ	18.90	-	220,860	지분
제시외 수목	기호 ㄹ	178여주	-	758,000	지분
합 계				153,215,260	

2. 결정의견

상기의 평가전례와 거래사례가격, 기타 참고가격 자료 (인근 부동산 탐문조사에 의한 가격수준 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따른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토지가격의 합리성이 인정되는 바, 이를 대상부동산의 감정평가액으로 결정합니다.

- 이 하 여 백 -

토지 감정평가요항표

- | | | |
|---------------|-----------------------|----------------|
| (1) 위치 및 주위환경 | (2) 교통상황 | (3) 형태 및 이용상태 |
| (4) 인접 도로상태 |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
| (7) 공부와의 차이 |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 |

(1) 위치 및 주위환경

기호 1 내지 5는 경상남도 진주시 상봉동 소재 봉인사 북측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경지, 종교시설, 임야 등이 혼재하고, 기호 6은 경상남도 진주시 상봉동 소재 진주봉원중학교 동측에 위치하며, 주위는 주택, 학교,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함.

(2) 교통상황

본건 및 인근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지역내 일반적인 교통사정은 보통시 됨.

(3)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 1 내지 5는 완경사지의 사다리형에 가까운 부정형 토지로서 현황 농경지로 이용 중이며 기호 6은 완경사지의 부정형 토지로 농경지 및 일부 주택 건부지로 이용 중임.

(4) 인접 도로상태

기호 1 내지 5 : 남측으로 4미터 내외의 지목 구거인 도로에 접하며
기호 6은 북서측으로 지적도상의 도로 폭보다 좁은 노폭 2미터 내외의 도로가 있음.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1 ~ 5 :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 : 자연녹지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자연경관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진주봉원중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진주봉원중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임.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토지 감정평가요항표

- | | | |
|---------------|-----------------------|----------------|
| (1) 위치 및 주위환경 | (2) 교통상황 | (3) 형태 및 이용상태 |
| (4) 인접 도로상태 |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
| (7) 공부와의 차이 |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 |

-기호 6 지상에 소유자 미상의 제시외 건물 (기호 ㄱ 내지 ㄴ, 주택 및 창고 등), 제시외 수목(기호 ㄴ, 밤나무, 석류나무, 복분자 등)이 소재하며, 토지의 사용수익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됨.

(7) 공부와의 차이

-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 1: 임대관계 : 미상임.
- 2) 기 타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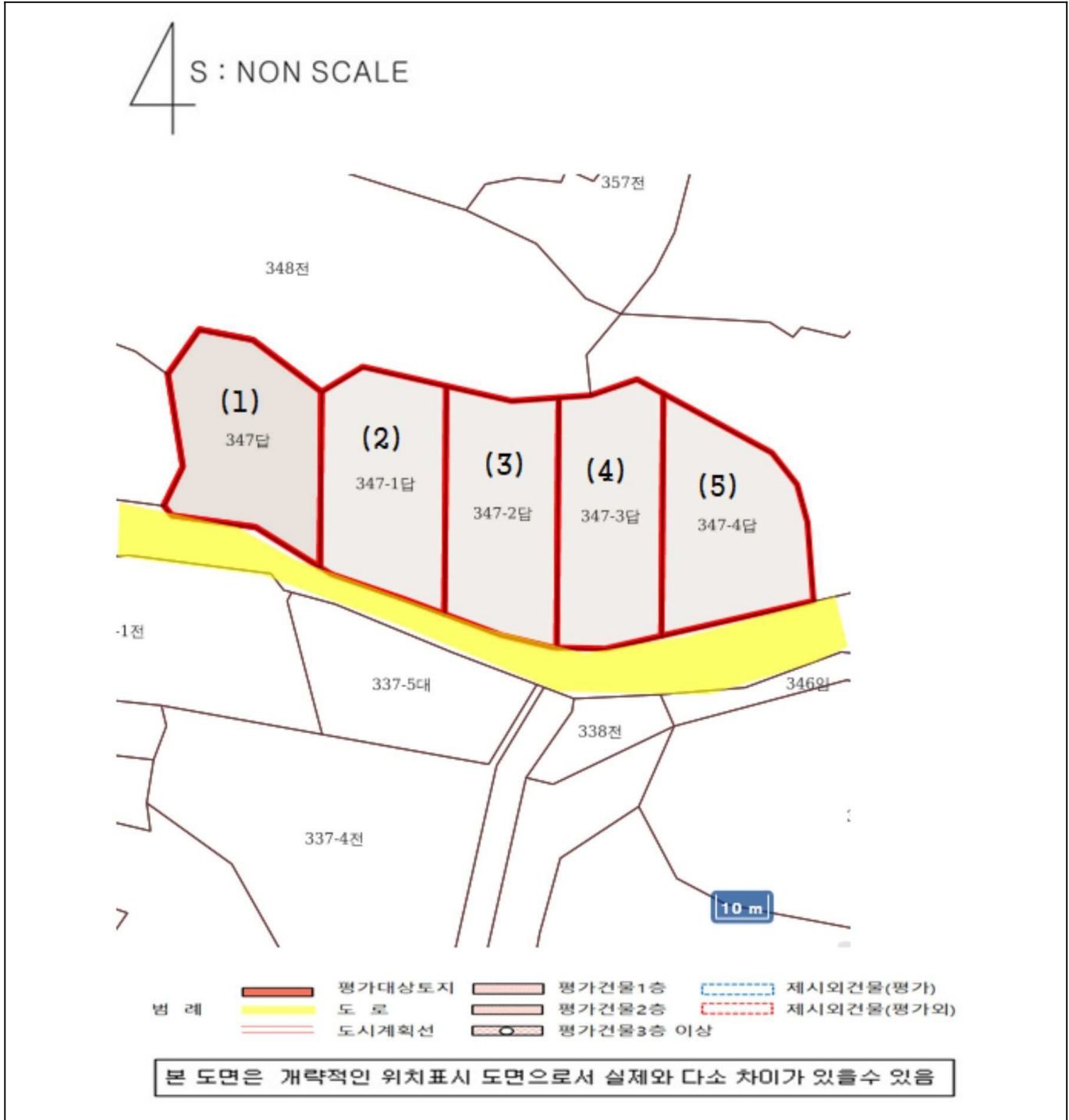
위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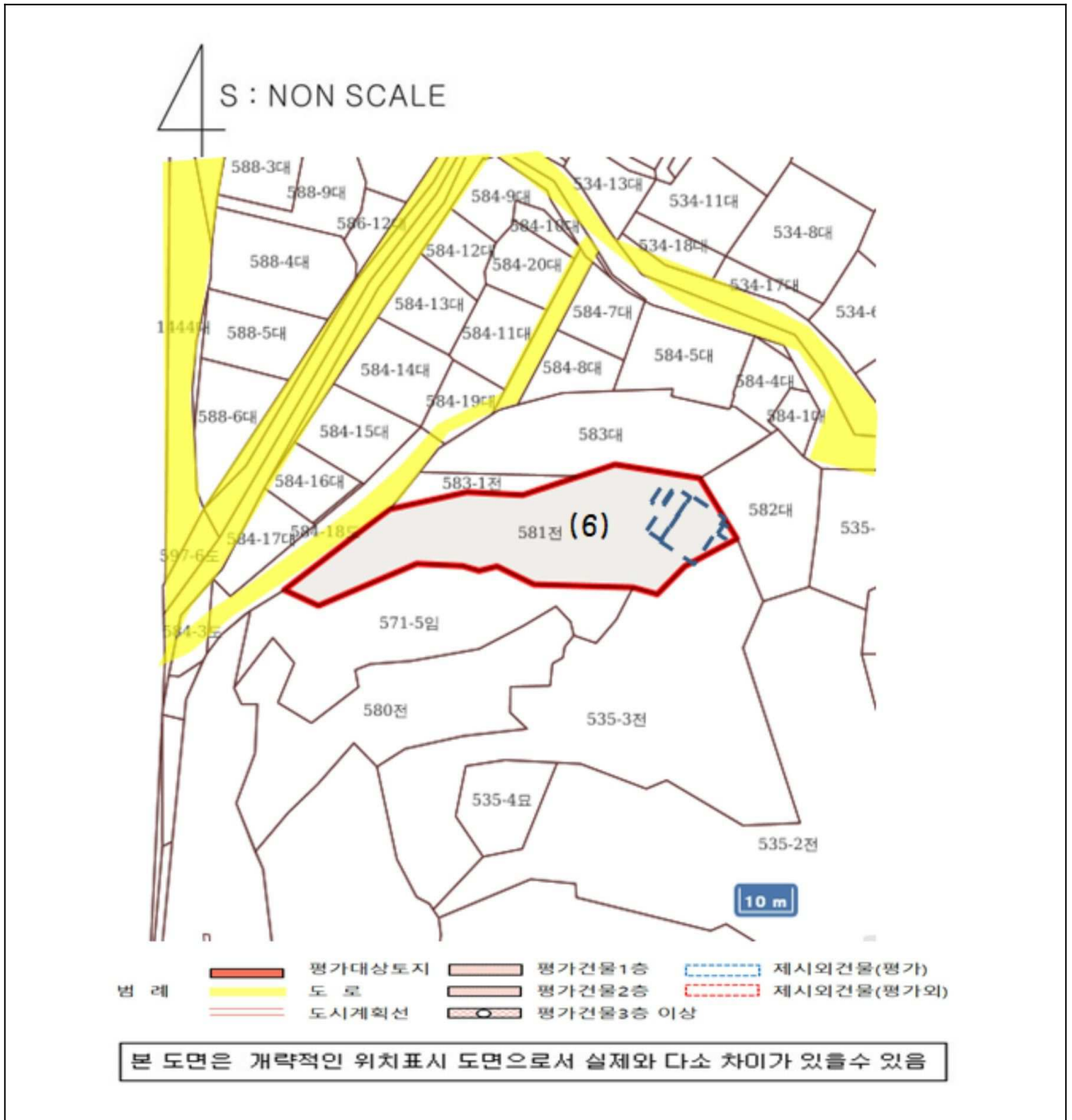
소재지 경상남도 진주시 상봉동 347외



지 적 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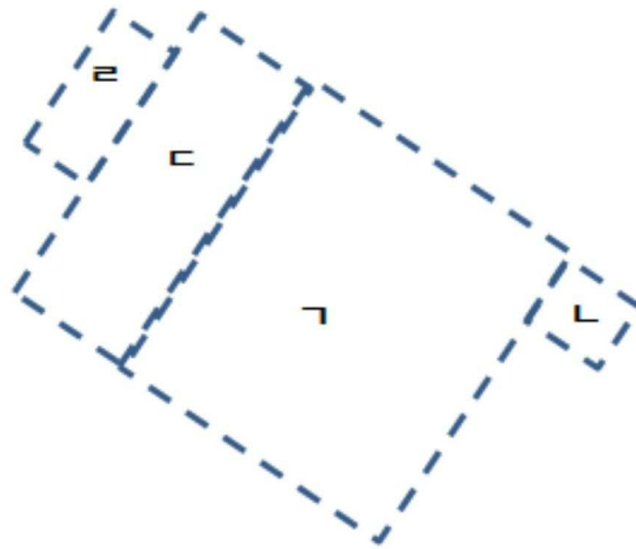


지 적 도



건물 개황도

4 S : NON SCALE



제시외 건물

기호 ㄱ : 조적조 스투트지붕 단층 (주택) 약 36.0 m² (실측면적)

기호 ㄴ : 조적조 스투트지붕 단층 (재래식 화장실) 약 2.7 m² (실측면적)

기호 ㄷ : 조적조 스투트지붕 단층 (창고 등) 약 15.0 m² (실측면적)

기호 ㄹ : 목조 함석지붕 단층 (창고) 약 3.0 m² (실측면적)

범례		평가대상토지		평가건물1층		제시외건물(평가)
		도로		평가건물2층		제시외건물(평가외)
		도시계획선		평가건물3층 이상		

본 도면은 현장조사에 의해 표시한 개략적인 개황도로서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1 5



1 5



1 5



1 5



6



6

()









()





6



6